

# 윤영찬 의원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2021년 11월 24일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2월 1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I. 법률안 추진 과정의 문제

#### 1. 법률안 추진 경과

- 이 법률안의 대표발의자인 윤영찬 의원은 2022. 1.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 후원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공청회의 진행을 비롯한 실질적 주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NIA에서 담당하였고, 법률안 역시 NIA에서 마련한 것으로 보임. NIA 상위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청회 토론(이재형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에서 이 법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임을 밝힘
- 결론적으로 이 법률안은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되었으나 사실상 정부기관에서 추진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음

#### 2. 의견

-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률안이 의원입법을 통하는 경우 관련 부처 협의, 국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생략되는 등 매우 부실해질 수 밖에 없음. 특히 법률안은 관련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이 매우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추진 경과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함
- 최근 세계 각국에서 고위험 인공지능 감독 등 인공지능 규제를 소관하는 업무는 반독점/공정거래 등을 소관하는 시장감독기관이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 국가인권기구 또한 공동규제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률안은 인공지능 규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국가 감독 거버넌스를 수립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내외 규제 기관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신규 규제 문제를 다루는 제정 법률안로서 큰 결함임

- 한편, 인공지능의 위험도 평가에서는 전통적인 이용자(user)의 개념과 구분하여 그 적용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함.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다른 기업이 도입하여 채용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이용하였을 때 그 위험성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그 이용 기업이 아니라 그 대상이 되는 채용 지원자가 됨. 이에 최근 인공지능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인 여러 국제 문헌에서는 ‘영향을 받는 당사자 개인/집단(affected individuals/groups)’의 개념에 주목하고 그 보호에 노력하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경우 국외 개인정보 보호법(예: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 GDPR 제22조) 뿐 아니라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2021. 9. 28. 정부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723 제37조의2)의 경우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그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모색하여 왔음. 이처럼 인공지능 규제에 있어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권리 주체의 이익이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에서는 권리 주체 이해관계자나 그들을 대표하는 이들의 의견수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처럼 법률안은 제정 경과는 물론 아래 항목에서 후술하였듯이 그 내용면에서 여러 이해관계자 중 그 규제 대상인 기업의 이해관계와 의견수렴에 주로 치중하고 있음
  -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은 2019년 발표한 보고서<sup>1</sup>에서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법적 체계를 도입할 때 시민사회단체와 인공지능 및 인권에 관련된 전문가를 비롯한 관련 이해관계자와 유의미하게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결론적으로 법률안은 경과 면에서나 내용면에서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고, 규제의 실효성 또한 담보하고 있지 못함. 이와 같은 제정 경과는 이 법률안이 국민 편익과 공익적 관심보다 관련 기관의 소관 사항에 급급한 입법으로 추진되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함.

## II. 법률안 내용에 대한 의견

### 1. 소관 부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이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등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up>1</sup> Council of Europ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19). Unboxing artificial intelligence: 10 steps to protect human rights.

제22조(규제의 개선 등) ① 누구든지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을 개발·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을 개발·이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정비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개선·정비를 위하여 관련 정부 기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알고리즘·인공지능 규제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알고리즘·인공지능 규제개선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의견

- 법률안은 그 목적(안 제1조)에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 촉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으며, 특히 제3장은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의 진흥’을 규정하고 그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다방면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관련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그 고유 업무로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률안을 소관하는 데 따른 한계라 할 것임. 관련 산업 육성과 기술 표준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산하기관이 산업 육성과 동시에 해당 산업 규제 업무를 동시에 소관하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함
- 더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기술 등 지능정보화에 있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등의 목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이미 시행해 오고 있음. 또다른 제정법률안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충분한 사회적 필요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의 실효성이 확인되어야 함
- 법률안이 참고하고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 규제를 일부 시행하고 있는 미국(연방거래위원회 FTC)<sup>2</sup>이나 시행을 준비 중인 유럽(2021. 4. 의회발의 인공지능법안)<sup>3</sup>의 경우 각국 시장감독기관과 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들이 집행을 소관하게 하였으며, 이때 기술/표준 관련 부처들은 기술 표준을 수립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을 뿐임
- 특히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은 그 입법 취지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이 불확실성을 유발하고 안전 및 기본권리에 대한 기존 법률의 효과적인 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법의 제정 목적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제도(AI regulation framework)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이 법률은 규제 법률로서 입법 목적이 뚜렷치 않음.
- 법률안은 규제 기구로서 고위험인공지능심의위원회(안 제15조) 외에도 알고리즘·인공지능 규제개선위원회(안 제22조)와 분쟁조정위원회(안 제23조)를 두도록 하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산하 기관들의 소관업무 신설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원칙 준수에 대한 감독은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윤리위원회(안 제6조) 또는 민간자율 인공지능윤리위원회(안 제33조)를 기업 또는 기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그 규제 효과가 의문시될 뿐더러 법률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도 의문을 갖게 함
- 나아가 법률안은 이 법률 외 인공지능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제·개정에 있어서도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sup>2</sup>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lgorithms. Federal Trade Commission (2020. 4. 8).  
<https://www.ftc.gov/news-events/blogs/business-blog/2020/04/using-artificial-intelligence-algorithms>

<sup>3</sup> Proposal for a Regulation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2021. 4. 21).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library/communication-fostering-european-approach-artificial-intelligence> 현재 유럽의회에서 심사 중인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의 경우 2022. 3. 상임위 표결, 2022. 5. 전체 표결에 예정되어 있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서 정한 바를 기본적으로 따르도록 하였음(안 제4조). 이는 이 법률이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에 관한 한 기본법적 성격이나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 나아가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의 규제를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개선하고 정비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22조). 이는 또다른 기본법인 지능정보화기본법과의 관계를 모호하게 할 뿐 아니라, 향후 인권 보호,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 규제 제도조차 산업 육성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개입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위한 국가 인공지능 장래 규제의 가능성조차 위태롭게 하고 있음

-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무부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등 소관 국책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우회하는 편법과 인권침해적 개발에 대한 책임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규제의 소관 부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우 부적절함<sup>4</sup>
- 결론적으로 이 법률안은 그 목적 및 소관부처 등에서 인공지능 규제의 문제를 산업적이고 기술적 측면으로만 접근하고 있음. 이러한 접근법은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기존의 법률에 따라 보호 받아 온 소비자 및 정보주체의 권리, 나아가 영향을 받는 개인과 집단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규제법을 추진하는 국제 규범과 큰 차이가 있으며, 규제 법률로서 취지와 목적이 불분명해짐

## 2. 피해 구제와 이를 위한 투명성 보장 조항이 없음

### 1) 법률안 내용

제5조(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개발의 기본원칙) ①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를 배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개발·이용하는 자는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설계 또는 이용하여야 한다.  
 ③ 인공지능개발사업자 및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의 개발·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극적으로 구제하여야 한다.

제6조(인공지능개발사업자 및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의무) ① 인공지능개발사업자 및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제5조에 따른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개발의 기본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공지능개발사업자 및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이용자 보호 및 보상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인공지능개발사업자 및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이용자 보호 방안의 절차, 결과, 환류 등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인공지능개발사업자 및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기술 개발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기관 내부에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윤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윤리위원회는 알고리즘 구성 및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타당성에 대하여 매년 조사를 하고 이에 관한 이행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윤리위원회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sup>4</sup> [단독] 정부, 출입국 얼굴사진 1억7천만건 AI업체에 넘겼다. 한겨레 보도 (2021. 10. 21).

제33조(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5조에 따른 기본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이하 “민간자율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윤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기술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사람이 소속된 교육·연구 기관
2. 인공지능개발사업자 및 인공지능이용사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기관

② 민간자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1.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활용에 있어서 윤리원칙의 준수 여부
2.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활용의 안전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조사·연구
3.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활용의 절차 및 결과에 관한 조사·감독
4. 해당 기관 연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인공지능 윤리원칙 연구·개발·활용 교육
5.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활용에 적합한 분야별 윤리지침 마련
6. 그 밖에 윤리원칙 구현에 필요한 업무

③ 민간자율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그 구성에 있어서 하나의 성(性)으로만 할 수 없으며,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및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자율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위한 표준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자율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고위험인공지능개발사업자의 책무)

② 고위험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이용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고위험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의 동작원리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영업비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의견

- 법률안은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개발의 기본원칙(안 제5조)에서 차별금지, 자기정보 통제권 및 신뢰성과 투명성 보장, 공정한 이용자 권리 보장 및 피해 구제를 일반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이하 조항에서 이 원칙을 집행할 수 있는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음
- 인공지능 사업자는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할 뿐이며(안 제6조 제1항), 이용자 보호 및 보상 조치를 하여야 하지만(안 동조 제2항) 그 절차 등에 대한 보고서의 공개 여부는 ‘자율’이며(안 동조 제3항),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원칙 준수를 위한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윤리위원회를 두지만(안 동조 제4항) 타당성 조사와 이행보고서 작성 또한 ‘자율’임(안 동조 제5항). 일부 기관 및 사업자는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안 제33조 제1항), 윤리원칙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뿐임(안 동조 제2항).
-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오늘날 사업자 등은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무를 가지는데,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의 성격을 노력 의무로 하고, 인권의 존중을 위해 마땅히 이행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자율로 규정하는 것은 사업자 등이 준수해야 할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무를 부당히 면제하는 것임
- 최근 여러 국제 규범에서 권고하는 인공지능 규제입법은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책임성 보장, 적절한 감독 체계와 구제 수단 마련을 꼽고 있으나 법률안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함
  - 유엔 사무총장은 2020년 권고<sup>5</sup>에서 신기술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민간 부문 활동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입법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지고

<sup>5</sup> 유엔문서 A/HRC/43/29 (2020. 3. 4). 62문.

-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이 법률에서 신기술이 사용되는 상황에 대한 책임성을 완전하게 보장하고 적절한 감독 체계와 구제 수단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음
- 유럽평의회는 2020년 회원국 권고<sup>6</sup>에서 국가는 알고리즘 시스템 사용에서 인권 침해를 억지하고 모든 행위자가 인권을 존중 및 증진하고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도록 입법 및 규제 체제를 개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투명성, 책무성 및 효과적인 구제 수단’ 확보를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 인공지능의 높은 투명성 수준, △알고리즘의 선택 및 결정에 대한 추적가능성, △이의제기 가능성,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 및 독립적인 감독, △효과적인 피해 구제 등을 권고하였음
  - 캐나다 정부는 2019년 모든 공공기관 인공지능에 대한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위험 수준별 요구사항을 정부 훈령으로 법규화하였으며<sup>7</sup>,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자동화된 의사결정 전 공지하고, 의사결정 후 영향을 받는 개인에게 설명하며, 필요한 경우 정부가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검토와 감사 권한 보장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였음. 이러한 투명성 보장을 통하여 시민이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함
  - 영국 정부는 2020년 공공 조달 지침을 발표하고 시행 중이며, 공공 조달되는 모든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 공공 인공지능의 ‘블랙박스’ 효과 및 공급업체에 대한 종속(lock-in) 방지를 요구함<sup>8</sup>.
- 특히 이용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고위험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동작원리를 알리도록 하면서도 어떤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오히려 투명성 보장을 훼손하고 있음(안 제17조 제2항).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공개 의무를 면제하면서도 그러한 영업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법률로 정하지 않음. 최근 여러 국제 규범들은 인공지능 규제 입법이 필요한 이유로 불투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으로부터 일정한 수준으로 제도적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이 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함을 들고 있음.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방지하는 규제 집행과 피해자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는 입법은 불필요하다 할 것임. 특히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은 이 법에 따라 국가 감독 기관이 획득한 자료는 기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제64조)고 명시하여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021년 보고서<sup>9</sup>에서 “인공지능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인공지능 시스템을 유의미하게 조사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시스템이 위해를 야기하는 경우에서 효과적인 책무성 확보에 장벽이 될 수 있다”(20문)고 지적하고,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일반 사항 공개 △영향을 받는 개인에 대한 설명가능성 △공공조사 가능성 △책무성 확보 등 다차원으로 제시하였음. 특히 최고대표는 “국가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유의미한 조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달규칙은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감사가능성 등 투명성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갱신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는 인권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유의미한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사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55~56문)

<sup>6</sup> Recommendation CM/Rec(2020)1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the human rights impacts of algorithmic systems.

<sup>7</sup> Directive on Automated Decision-Making.

<sup>8</sup> Guidelines for AI procurement.

<sup>9</sup> 유엔문서 A/HRC/48/31 (2021. 9. 13).

- 유럽평의회 또한 2020년 회원국 권고에서 국가적인 인공지능 투명성 수준에 대하여 “국가는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유의미한 조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달규칙은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감사가능성 등 투명성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갱신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는 인권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유의미한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사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음. 유럽평의회가 지지하는 공공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시행에 있어서도 “기밀 유지 고려 사항 또는 영업 비밀이 효과적인 인권영향평가의 실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며, 민간 인공지능의 경우에도 영업 비밀 정보를 공개적인 인권영향평가와 별도의 보고서로 기록하여 최소한 관련 감독 기관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음
- 2017년 미국 텍사스 휴스턴의 연방지방법원은 민간 기업에서 조달한 교육청의 교사 평가 알고리즘에 대한 판사에서 민간 기업의 영업비밀과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적법절차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비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실시하였음<sup>10</sup>
- 2020년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공공 사회복지급여 부정수급 탐지 시스템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투명성 부족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운영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음<sup>11</sup>

### 3. 고위험 인공지능 규제 대상과 내용이 부실함

#### 1) 법률안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인공지능”이란 학습, 지각, 판단, 자연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고위험인공지능”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 가.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인공지능
  - 나. 생체인식과 관련된 인공지능
  - 다. 교통, 수도, 가스, 난방, 전기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인공지능
  - 라. 채용 등 인사 평가 또는 직무 배치의 결정에 이용되는 인공지능
  - 마. 응급서비스, 대출 신용평가 등 필수 공공·민간 서비스 관련 인공지능
  - 바. 수사 및 기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에 이용되는 인공지능
  - 사. 문서의 진위 확인, 위험평가 등 이민, 망명 및 출입국관리와 관련된 인공지능

제17조(고위험인공지능개발사업자의 책무) ① 고위험인공지능의 개발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이하 “고위험인공지능개발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위험인공지능 개발 관련 위험관리시스템의 구축
2. 고위험인공지능 개발 단계별 문서의 전자화
3. 고위험인공지능의 개발 결과의 추적을 위한 기록

<sup>10</sup> HOUSTON FED. OF TEACHERS v. HOUSTON INDEPENDENT.  
<<https://www.leagle.com/decision/infdco20170530802#>>.

<sup>11</sup> ECLI:NL:RBDHA:2020:1878.

<<https://uitspraken.rechtspraak.nl/inziendocument?id=ECLI:NL:RBDHA:2020:1878>>.

4. 고위험인공지능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5. 사람에 의한 고위험인공지능의 관리·감독
  6. 고위험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의 사이버 보안 강화
  7.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적 안전에 중대한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위험 평가
- ② 고위험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이용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고위험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의 동작원리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영업비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고위험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인공지능을 통하여 업무가 처리됨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고위험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책무) ① 고위험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고위험인공지능이용사업자”라 한다)는 고위험인공지능이용사업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인공지능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고위험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고위험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고위험인공지능을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고위험인공지능 이용자의 보호) ① 고위험인공지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

1. 고위험인공지능을 이용한 기술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요구권
  2. 고위험인공지능을 이용한 기술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이의제기권 또는 거부권
- ② 고위험인공지능 이용자는 알고리즘에 따른 부당한 처우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6조제4항에 따른 알고리즘 및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른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윤리위원회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자료의 제출을 위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이용자는 제공받는 서비스가 알고리즘에 따라 처리된다는 사실을 제공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제공받는 서비스가 알고리즘에 따라 처리되는 것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제20조(책임의 일반원칙) ① 이용자는 고위험인공지능의 기술 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 해당 고위험인공지능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고위험인공지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손해가 해당 고위험인공지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2. 해당 고위험인공지능사업자가 고위험인공지능 기술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3. 해당 고위험인공지능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
4. 해당 고위험인공지능 기술 또는 서비스를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5. 해당 고위험인공지능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함이 고위험인공지능사업자가 해당 고위험인공지능서비스를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③ 정부는 고위험인공지능사업자에게 고위험인공지능 기술 또는 서비스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보험 가입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고위험인공지능 기술 또는 서비스의 활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또는 보험상품 개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보험 가입 권고·지원 및 제4항에 따른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의견

- 법률안은 정의(안 제2조 제2호)에서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의 기능 중 인권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예측과 추론을 명시하지 않았음. 이는 잘못된 예측과 추론으로 안전과 인권에 위험한 영향을 끼치는 인공지능을 이 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킬 우려가 있음
  -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인공지능 도구는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를 비롯하여 개인에 대해 광범위한 추론을 할 수 있으며 특정 정치적 또는 개인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집단을 식별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또한 미래의 행동이나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인공지능이 만든 추론과 예측은 그 확률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사람들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의 기반이 될 수 있다.(15문)”고 지적하고 이들 “인공지능의 추론과 예측은, 사람들의 자율성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세부사항을 확립할 권리를 포함하여,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향유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이는 또한 사상과 의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표현의 자유, 공정한 재판 관련 권리 등 다른 권리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17문)”고 강조하였음
  - 현행 지능정보화기본법에서는 “지능정보기술”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제2조제4호가목)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의 경우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인공 지능 시스템’에 대하여 “부속서 I에 열거된 기법과 접근법을 통해 개발되고 인간이 정의한 목표를 위해 그것이 상호 작용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예측, 추천, 결정 등의 아웃풋을 생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부속서 I은 이를 다시 (a) 딥 러닝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지도형, 비지도형 및 강화형 학습을 포함한 기계 학습 접근 방식 (b) 지식 표현, 귀납적(논리) 프로그래밍, 지식 기반, 추론 및 연역적 엔진, (기호) 추론 및 전문가 시스템을 포함한 논리 및 지식 기반 접근 방식 (c) 통계적 접근 방식, 베이즈(Bayesian) 추정, 검색 및 최적화 방법으로 명시함
- 법률안은 정의(안 제2조 제3호)에서 고위험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위험 인공지능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 등 해외 입법에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인공지능’(안 제2조 제3호 가목) 등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거나, 장난감, 무선장비, 무인항공기 등 일부 인공지능 제품, 플랫폼기업의 자영업 접근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입시 등 교육 관련 인공지능, 사법 분야 인공지능을 제외하고 있음. 세계적인 논란이 큰 사회복지 인공지능, 생체인식을 통한 분류 및 거짓말/감정 인식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의 포함 여부는 불투명함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경우는 다음과 같음 △인공지능이 제품의 안전 구성요소로 사용되거나 그 자체가 제품인 경우 : 기계류, 장난감, 선박, 승강기, 폭발물, 무선장비, 압력 장비, 공중 케이블, 개인 보호 장비, 가스 연료 연소 기기, 의료 기기, 항공, 자동차, 해양 장비, 철도, 무인 항공기 등 △ 자연인의 실시간 및 사후 원격 생체 인식 및 분류 △도로 교통, 수도, 가스, 난방 및 전기 공급 등 중요 인프라의 관리 및 운영 △입시, 학력평가 등 교육 및 직업 훈련 △채용 등 고용, 근로자 관리 및 자영업에 대한 접근 △신용평가 등 필수적인 민간 서비스, 사회복지급여 등 공공 서비스 및 혜택에 대한 접근 및 향유 △수사기관 등 법집행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 자연인 개별 범죄 위험 평가, 거짓말 탐지기 및 감정 상태 감지, 딥 페이크 감지, 증거 신뢰성 평가, 자연인과 집단의 프로파일링, 프로파일링에 기반한 예측 및 평가, 자연인 범죄 분석 시 데이터 분석 △이주, 망명 및 국경 통제 관리를 위한 거짓말 탐지기 및 감정 상태 감지, 위험 평가, 진위 확인, 적격성 조사 △사실과 법 조사 및 해석 등 사법 행정 및 절차

- 가장 큰 문제는 고위험에게 요구되는 책무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 규제 효과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점임. 법률안에서 고위험 개발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의무(안 제17조)는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단계별 문서 전자화, 결과 추적을 위한 기록, 이용자 정보제공, 사람의 관리감독, 사이버 보안 강화, 생명 신체 안전 위험성 평가 △이용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고리즘 동작원리 고지(영업비밀 제외)를 들 수 있음. 이 경우 영업비밀 일을 제외한 문제는 앞서 항목에서 지적한 바와 같고, 고품질 데이터셋 의무 및 정확성과 견고성 등 기업 측에서 민감하게 생각해온 이슈를 제외하여 고위험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효과를 반감시킴. 더불어 시장 출시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영향평가, 일반 공개, 심지어 감독기관 협조 및 준수 등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를 제외하였음
  - 반면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의 경우 모든 고위험 인공지능의 요구사항으로 ① 위험관리 시스템의 의무 ② 고품질 데이터셋의 의무 ③ 기술문서의 작성·유지 의무 ④ 기능추적 로그기록 저장 의무 ⑤ 사용자에 대한 투명성 의무 : 대리인 신원, 본래 목적과 보안 수준 등 시스템 특성 및 기능, 성능 변경, 인간 감독 수단, 유지 관리 수단 공개 ⑥ 인간의 감독 의무 : 이상 징후, 기능 장애, 예기치 않은 작동의 모니터링 탐지 및 해결, 아웃풋의 자동화 편향 인지, 아웃풋 해석, 아웃풋 무시, 시스템 중단 등 ⑦ 정확성, 견고성, 사이버 보안을 두고 있음. 또한 개발사업자에 해당하는 제공자는 출시전 적합성 평가, 유럽연합 등록공개, 감독기관 시정 조치 준수, 인증 마크 획득, 관할 당국 요구 준수, 이행 및 신고 등의 의무가 있음
  - 더불어 이 법에 따라 지정되는 각국 감독 기관은 제공자가 사용하는 학습, 검증 및 테스트 데이터셋에 전면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하고 합리적인 경우 인공지능 시스템의 소스 코드에 대한 접근도 허용하고 있음. 특히 감독 기관 뿐 아니라 기존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인권기구 등 규제 기관들은 고위험 인공지능이 작성하거나 유지하는 문서에 접근할 수 있으며 감독 기관과 협조함(전문79 및 제64조)
- 법률안에서 고위험 이용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의무(안 제18조)는 △이용자 권리 침해 여부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인공지능 이용 서비스 제공 여부 이용자에게 고지 △생명, 신체안전에 중대한 위험 가능성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고지를 들 수 있음. 소비자 등과 직접 접촉하게 되는 이용사업자에게 추상적인 모니터링과 고지 의무만 부과하였을 뿐, 모니터링으로 포착된 위험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를 규정하지 않음. 인풋데이터 관련성, 로그기록 유지보관, 영향평가 등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반면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의 경우 이용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용자 의무로 ① 인풋 데이터의 관련성 보장 의무 ② 모니터링 및 신고 또는 중단 의무 ③ 로그기록 유지보관 의무 ④ 개인정보 영향 평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인공지능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이용자에게 대한 보호 규정은 그 자료 접근 및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에서 이용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음(안 제17조 내지 제20조). 고위험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이용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고위험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동작원리를 알려야 하지만 영업비밀은 제외하였고(안 제17조 제2항), 고위험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지만, 보다 자세한 설명은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에 한함(안 제18조). 따라서 인공지능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인공지능에 대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하여야만 하는데, 이는 ‘알고리즘에 따른 부당한 처우’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알고리즘 및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 또한 거부되는 경우 국무총리 소속 ‘고위험인공지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음(안 제19조). 이러한 제한적이고 복잡한 자료 공개는 해당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은 이용자가 자신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어렵게 함. 또한 이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열람권을 행사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도 있음

-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국가, 기업 및 기타 AI 사용자는 그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의 종류, 사용 목적, 시스템 개발자와 운영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일반적인 정보공개]해야 한다. 의사결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졌을 때 또는 자동화 도구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을 때 영향을 받는 개인에게 이[의사결정에 대한 사항]를 체계적으로 알려야 한다. 개인이 제공하는 개인 정보가 AI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셋의 일부가 될 경우 이를 통지[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사항]해야 한다. 또한 인권에 중대한 애플리케이션[고위험]에 대하여 국가는 그 AI 도구와 사용에 대한 주요 정보를 포함하는 등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개인 정보 보호 체계에 포함된 투명성 의무와 개인정보 열람, 삭제 및 정정권의 효과적인 시행이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이 자신에 대해 작성된 프로파일을 더 잘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제55문)”고 권고함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은 고위험 인공지능의 경우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공개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그 등록항목으로 △공급자(대리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인공지능시스템을 식별·추적할 수 있는 상표명과 명확한 참고사항, △인공지능시스템의 목적 설명, △유통여부 등 인공지능시스템의 시장에서의 상태, △인증서의 유형, 인증번호, 유효기간 및 사본, △EU 적합성 선언 사본 등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였음. 더불어 그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일반규정(GDPR)에 따른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이처럼 인공지능의 대상이 되거나 영향을 받은 당사자가 자료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원칙적으로는 그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안 제20조), 그 입증 책임은 여전히 해당 당사자에게 무겁게 부과되고 있으며, 사업자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 손해가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 또는 감경하고 있음. 이는 기업과 개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 등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 책무를 해태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움

#### 4. 국가 감독 거버넌스가 부적절함

##### 1) 법률안 내용

제15조(고위험인공지능 심의위원회) ① 정부는 고위험인공지능을 개발·이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고위험인공지능과 그 알고리즘의 규율에 관한 기본원칙 및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위험인공지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고위험인공지능과 그 알고리즘 규율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2. 고위험인공지능과 그 알고리즘의 규율에 관한 관련 정책의 수립
3. 고위험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사항
4. 공공 부문에서의 고위험인공지능의 도입에 관한 사항
5. 윤리원칙 및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제6조제4항에 따른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제19조제3항에 따라 고위험인공지능 이용자가 요구한 자료 제출에 대한 심사
10. 그 밖에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 2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기술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장은 각자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국무총리인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인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의견

- 이 법률안은 국가적으로 고위험인공지능을 국무총리 소속 고위험인공지능 심의위원회를 두고 민간1인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2명의 위원장을 두고 당연직 공무원 및 전문가 30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음. 심의위원회는 고위험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의 규율 관련 기본원칙 및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주로 심의·의결함. 이때 전 부처 인공지능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사업자 내부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이용자가 요구하고 윤리위원회가 거부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심사하도록 함.
- 법률안에서 심의위원회의 지위는 형식적으로 국무총리 산하이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보다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해 사회적으로 강력하게 요구되는 국가 차원의 감독 거부년스를 형식화하고 있으며, 사업자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대상 이용자에게 오히려 장벽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더불어 그 구성에 있어 당연직 공무원 외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있을 뿐, 영향을 받는 당사자 개인이나 집단, 또는 그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유엔 사무총장은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에 관한 의사결정에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각 국에 권고한 바 있음
  - 유엔 인권최고대표 또한 인공지능 사용 등에 대한 결정에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 특히 영향을 받는 개인 및 집단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모든 국가와 기업에 권고하였음

-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의 경우 이 법에 따라 지정되어 집행을 책임지는 시장 감독 기관을 단독 또는 복수로 각국에 지정하고 이들 각국 감독 기관과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감독관(EDPS)으로 구성된 유럽연합 인공지능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함. 각국 감독 기관 및 인권기구 등 기존 규제 기관은 인공지능 사업자가 보유한 관련 자료에 접근하고 관련 의무 및 요구 사항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위험한 인공지능을 시장 회수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시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규제기구로서 역할을 분명히 하였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또한 비록 소비자 보호 업무에 한정되어 있지만 시장의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여러 국제 규범이 기존의 독립적 규제기관을 활용하는 효과적인 인공지능 규제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산업 진흥적 국가 감독 거버넌스보다 기존의 규제 기관의 효과적인 감독 기능 협업과 지원이 우선시되어야 함
  - 유럽연합 기본권청은 2020년 보고서<sup>12</sup>에서 “AI 사용 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감독 전문 조직을 더 잘 활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개인정보 보호 기관, 평등 기구, 국가 인권 기구, 옴부즈 기관 및 소비자 보호기관이 포함된다.”고 지적함(의견3)
  - 유럽평의회 회원국 권고는 “국가가 독립적 감독 기관, 평등 기구, 국가인권기구, 대학, 표준 수립 기구, 서비스 운영자, 알고리즘 시스템 개발자 및 특히 인권 옹호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비정부 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함
  -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입법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적정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독 체계를 포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최고대표는 “이러한 감독은 행정적, 사법적, 준사법적 및 의회 감독 기관의 조합으로 수행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 소비자 보호 기관, 부문별 규제 기관, 차별 방지 기구 및 국가 인권 기구가 감독 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5. 아무런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이 없음

### 1) 법률안 내용

규정 없음
-------

### 2) 의견

- 이 법률안은, 고위험인공지능을 개발·이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반면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는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이 법률을 소관하게 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표하여 공청회에 참가한 토론자는 산업 발전을 위해 벌칙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 그러나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인공지능 규제 입법을 표방하면서도 아무런 벌칙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무런 규제

<sup>12</sup>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2020). Getting the Future Rights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undamental Rights.

효과 없이 소관 부처 산하 기구 다수를 설치운영하거나 사업자 내부 자율적인 기구를 지원하는 데에 막대한 혈세가 소요될 것을 예상하게 함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의 경우 금지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하거나 서비스에 투입한 경우, 최대 3천만 유로(약 400억원) 또는 위반자가 기업인 경우 전년도 전세계 연매출의 최대 6%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됨. 조사를 포함하여 국가 관할 당국과의 협력의무 위반시 최대 2,000만 유로 또는 위반자가 기업인 경우 전년도 전세계 연매출의 최대 4%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됨. 인증 기관과 국가 관할 기관의 요청에 응답하여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오도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유로, 또는 위반자가 기업인 경우 전년도 전세계 연매출의 최대 2%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됨.
- 결국 이 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것보다 관련 사업자를 보호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데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III. 결론

-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편익을 보호하는 한편으로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기존 법률 집행의 난점을 해소하고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는 입법이 필요함.
- 그러나 윤영찬 대표발의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고위험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이 개인 및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균형있는 접근보다는, 형식적 규제로 관련 사업자를 보호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데 편중되어 있음.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이 필요하다면 기존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지능화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더욱 적절할 것임.
- 또한 인공지능 규제 입법의 소관부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우 부적절함. 관련 산업 육성과 기술 표준을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을 규제하기 보다는 이미 고위험 인공지능 규제를 도입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경우에서처럼 시장반독점/공정거래 등을 소관하는 시장감독기관, 국가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 국가인권기구가 공동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끝>